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05~24
----------	---------

제출연월일	2005. 5. .
제출자	거창군수

■ 제정이유

- 연차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선정·지원함으로써,
- 관내 업체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견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함(안 제2조).
- 나. 기금은 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 다. 기금 용도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과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사용함(안 제4조).
- 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둠(안 제5조).
- 마. 융자금의 용도를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 기금, 시설 현대화 자금 등으로 함(안 제10조).
- 바.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 함(안 제12조).
- 사. 융자금의 융자 기간을 4년 이내,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3억원 범위안으로 함(안 제13조).

■ 제정근거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 (2005. 2)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재원
2.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경제담당주사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계) 기금의 경리절차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재원(이하"자금"이라 한다)을 용자받은 경우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제9조 (용자대상업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 한다.

제10조 (용자금의 용도) ①군수가 용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용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자계획의 공고 등) ①군수는 매년 초에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용자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용자금의 대출) ①군수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용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 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자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용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13조 (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용자기간은 4년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용자금의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총액 3억원의 범위안에서 개별업체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용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용자금의 금리 등) ①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 ② 군수는 용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용자금의 상환) ①용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 해의 자금 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 ② 군수는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③ 용자금의 대출원리금 회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다.

제16조 (변경사항 통보) 용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산 및 보고 등) ①취급금융기관은 용자상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 및 용자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 및 용자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